

제4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1. 3. 8.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3월 8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도 규 상 위 원 장

최 훈 위 원

윤 석 현 위 원

이 승 현 위 원

위 성 백 위 원

심 영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1년도 제1차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3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제4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21년도 제1차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3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제4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既송부한 자료로 보고에 갈음함

2) 의결안건 심의

의결안건 제80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출 전과정에 공정한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채권추심업자와 개인채무자간 권리·의무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대부업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

○ (위원)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

의 추심업무를 신용정보 회사에 위탁하고 있음. 지금까지 불합리한 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개정됨. 그래서 이 개정 내용들을 위탁한 신용정보회사에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 취지를 살려서 불합리한 추심과정이 없도록 하고 채무조정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보고자) 법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음.
- (위원) 예금보험공사의 경험이 많을 테니까 법안 통과하는 과정에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시기 바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81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유동화증권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해 정부입법으로 자산유동화법을 개정하는 내용

- (위원) 기초자산의 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발행금액의 5% 수준의 매입을 요구하는 조항을 두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의미는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5%가 고정된 수치인 것 같음. 최소한 앞으로라도 위험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관련

해서 Multi-Seller의 경우에는 5%를 서로 나누어서 분담하는 방식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음.

- (보고자)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5%가 고정되어 있는 숫자이긴 함. 향후에 제도 운영 상황을 보아가면서 위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까지 있는지, 그 부분은 시장상황을 보고 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됨. 이 5%라는 숫자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만든 숫자는 아니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이 자리를 잡은 제도에서 가져온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안을 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그리고 Multi-Seller 유동화 같은 경우에 자산보유자가 여러 명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액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보유자가 여럿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기계적으로 자산보유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유동화를 책임지고 운용하게 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쪽에 5%매입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함. 중소기업들이 매출채권이나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유동화 할 때 적용하는 것이 Multi-Seller 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는 구조인데, 그것을 중소기업이나 그런 회사들한테 나눠서 5%매입의무를 부담하기보다 그것을 중개하는 증권사라든지 그쪽에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구조를 짜놓았음. 그 점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 (위원) IMF 뒤에 우리나라에 없던 자산유동화법을 연구해가면서 만들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개정이 안 됐던 것을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개정하는 것 같음. 오늘 논의된 내용

까지 포함해서 정부입법 과정에서 혹은 기획하는 과정에서 수용할 것 있으면 수용하고 잘 만들었으면 좋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82호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83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전자증권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상법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예탁결제원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84호 『금융결제원의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결제원을 금융회사 간에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85호 『고려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고려신용정보(주)가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 성실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86호 『서창농협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
하여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장이 내용을 설명함

※ 서창농협이 신용정보의 정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이 내용을 보고만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오류인지?
고의인지? 민원인이 온 것을 보아서는 고의성이 있어서 민
원이 온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보고자) 고의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음. 기본적으로 농협은
법원의 면책결정이 전달 과정에서 농협중앙회로 전달이 됨.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는 그 결정문을 받아서 서창농협에
관련되는 정보를 바로 문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
에 등록을 함. 오류정보를 등록을 하면 서창농협에서는 그
런 사실이 있었는지를 모르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연체
된 채권이라고 신용정보 변경 정보가 뜸. 그러면 그때서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서 이것이

면책된 것인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과실로 인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음. 그래서 이런 연계정보가 등록되게 되었음. 구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 알람 같은 것을 통해서 법원에서 오는 정보를 바로 해당되는 채권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조치를 했음. 그런데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 고의 부분이 크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산정 시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였음.

○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음. 잘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계속 확인해서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찰하도록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87호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변경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은행 LCR 규제비율 한시적 완화 기한을 2021년 9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88호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변경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화 LCR 규제비율의 한시적 완화 기한을 2021년 9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

○ (위원) 이번 외화 LCR 유예 연장은 앞의 통합 LCR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좋은 조치임. 약간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릴
것은 규제비율보다 실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비율들이 훨
씬 높음. 한국은행에서 외화 쪽을 보면서 외화 LCR도 밀접
하게 보는데 항상 규제비율보다 실제 비율이 상당히 높음.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바인딩한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해
볼 때가 가끔 있었음.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LCR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3월에 기업위기로 충격
이 왔을 때 시장에 큰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음. 그래서
이런 규제라는 것이 실제로 그런 충격을 막기 위한 예방조
치라고 해야할지, 그런 방어장치인데 눈으로 보이는 규제비
율 자체는 굉장히 관찮았는데 실제로 위기는 또 오니까 이
런 부분을 정치(精緻)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임.

○ (보고자) 지금 외화 LCR 규제비율은 넉넉한 상황이지만 작
년 3월에 외화 금리급등에 따라서 ELS 상황과 관련해서 외
화 쪽의 유동성 문제가 생겼음. 작년 말로 기억하는데, 기재
부와 한은, 금융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과제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
서 거기에 보면 외화유동성을 한 달 만에 점검(check)하는
것을 일단위로 점검(check)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 부분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우려는 별개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위원) 특히 제2금융권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단순히 규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정치(精緻)하게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과 기재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규제완화, 또 다시 정상화될 때,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89호 『(주)파운트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산법상 출자승인 의무를 위반한 (주)파운트투자자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 (위원)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인지 확인이 가능한지?

○ (보고자) 별도 계좌를 통해서 거래하게 되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91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 규정 승인안』, 제92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93호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94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95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96호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97호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및 거래소시장 상장 활성화 등을 위해 한국거래소 소관 7개 규정에 대한 규정변경을 승인하는 내용

○ (위원)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관련해서 유니콘 기업 육성도 필요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쪽에서는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 투자자 피해도 우려되므로 사후관리 방안도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위원) 최소한 공시 같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보고자) 말씀하신 대로 성장성 요건으로 상장이 가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장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98호 『한국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 선정 심사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거래소가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거래정보저장소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99호 『한국거래소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거래소가 거래정보저장소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규정 제정을 승인하는 내용

- (위원) 외국환거래법에 의해서 한국은행이 외환전산망 집중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TR에서 만들어지는 일부 파생 관련된 보고서가 한국은행이 처리하고 있는 보고서와 중복이 됨. 점차적으로 TR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보고자) 지금 보고의무기관이 있고 정보이용기관이 있는데 정보이용기관에 한국은행, 금감원, 금융위원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음.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00호 『(주)카카오페이증권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가 (주)카카오페이증권의 대주주가 되고자 변경승인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01호 『공인회계사 ○○○에 대한 징계의결안』, 제

102호 『공인회계사 △△△ 등 2인에 대한 징계의결안』, 제103호 『공인회계사 ◆◆◆ 등 2인에 대한 징계의결안』, 제104호 『공인회계사 ●●●에 대한 징계의결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저질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정지를 부과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회계법인에 ◆◆◆ 회계사임. (주)☆☆☆☆☆와 (주)●●●에 대해서 본인은 감사 참여나 업무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음. 감사스케줄은 담당 회계사가 하고, 본인은 (주)●●●과 (주)☆☆☆☆☆에 대해서는 감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조서의 어떤 부분도 본인이 한 일이 없음. (주)☆☆☆☆☆는 2016년도에 감사를 처음 계약하기 전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2019년 2월에 처음 나가보았음. 그 이외에는 간 적이 없음. 외부감사법에서는 법률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감사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지만, 감사에 참여하거나 감사의견에 대해 아무런 참여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률적인 행위가 책임 있게 비추어 본인을 주책임자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보고 있음. 금감원 조사 시에도 회계법인 운영에 대해서는 물었으나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로 어떻게 참여했느냐 하는 것은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았음. 대표이사로서 관리책임에 대해 본인에게 묻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관리책임이

아니고 주책임자라면 본인으로서 2년을 업무를 배제하면 회계법인을 탈퇴해야 하고 모든 업무를 못하게 됨. 본인이 그 감사에도 전혀 참여 안 하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본인으로 하여금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 씀드리게 되었음.

- (위원) 지금 가장 기본적인 주장이 의견진술인은 회계감사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금감원에서는 업무정지 2년을 했는데 금감원이 그냥 가서 하지는 않았을 텐데 금감원이 왜 그렇게 판단했다고 생각하시는지?
- (진술인) 본인이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음. 작년 딱 하루 가서 2시간인가 조사를 받았 으며, 그 이외에는 조사받은 적이 없었음. 본인은 대표이사 로서 당연히 조사를 받겠구나 생각했지, 본인이 주책임자라 는 생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 알았다면 누구와 대질한 다든지 왜 본인이 책임자인지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텐데 본인과 운영상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어떤 부분에서 주책임 자다 하는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내용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금감원에서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회계사를 징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술인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담당이사로서 책임을 묻는 것임. 금감원에 보고한 감사계약서, 한공회의 품질관리감리 시 제출한 외부감사수행 회사 현황 및 감사조서에 모두 ◆◆◆가 담당이사로 기재되어 있음. 그리고 금감원 조사 문답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렸음.
-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인하는 것인지?
- (보고자) ◆◆◆ 주장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림. 금감원 조치양정기준에서는 감사조서에 기재된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판단하고 있고 감사조서 및 감사계약서에 ◆◆◆가 담당이사로 기재되어 있어서 우선 조치대상자임. 그리고 실질적으로 ◆◆◆와 문답에서 감사조서 및 감사계약서에 본인이 담당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는지도 물어보았음. ◎◎◎이나 ▽▽▽ 등 보조회계사도 ◆◆◆가 담당이사라고 판단하는데 인정하는지 물어보았음. 그랬더니 ◆◆◆는 조서에 기재된 것은 인정하지만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본인에게 보고하고 본인이 결정하여야 담당이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주장한바와 같이 2017년에는 회사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회계사는 종속회사 투자주식의 과대계상에 대해 ◆◆◆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을 물어보았더니 ◆◆◆는 과대계상에 대해서만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고 부인을 하였음. 이와 같이 감리팀은 ◆◆◆를 담당이사로 보는 이유에 대해 문답에서 물어보았고 ◆◆◆가 감사조서에 기재되어 있음. 그래서 금감원은 ◆◆◆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담당이사로 판단하게 되어있음.

○ (위원) 결국은 진술인이 여기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말
씀이신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이 건 관련해서 증선위에서도 아주 심도있게 논의되
었고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음. 금감원에서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을 징계하는 이유는 관리자 책임이 아
니고 진술인에게 주책임자, 주행위자로서 책임을 묻는 것임.
그리고 진술인이 담당이사이고 계약서에 본인 서명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논의 끝에 진술인과 ○○○ 회계사
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것으로 동의한 내용임.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05호 『(주)씨젠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
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씨젠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재무담당
임원·외부감사인에게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8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제1116호 ‘리스’ 개정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9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종속기업의 범위: 적용유예’ 개정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 한국회계기준원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10호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세부 방안별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하고, 기한 종료를 앞둔 세부 방안들의 기한 연장을 검토하는 내용

- (위원) 해외의 경우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규제 유연화를 정상화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 (보고자) 우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은 필요한 조치에 한해서 필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실시한다는 원칙 하에 시행하고 있음. 오늘 보고드리는 향후 계획도 세부방안 중 일부에 대한 연장 내용만 포함하고 있으며 연장이 불필요한 방안들은 연장하지 않고 있음.
- (위원) 전부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종료하고 필요한 방안만 연장한다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두 번째, 국제 동향을 보면 급격한 정상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향후 연장주기를 짧게 하는 한편 시장참가자들에게 상황진단 및 대응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하면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갈 계획임.
- (위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경우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바 있음. 규제 유연화 방안의 경우에도 종료시점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 (보고자) 기본적으로 정상화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적응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원칙을 표명한 바 있으며 적응기간 부여를 위해 필요하다면 점진적·단계적으로 정상화 한다는 계획임.

- (위원) 시장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방안 종료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들과 소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람.
- (위원) 규제 유연화 방안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등 효과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은 이루어졌는지?
- (보고자) 금융 규제 유연화 방안은 금융권의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한 것으로 '20.4월 방안 발표 시 바젤3 조기 도입 등을 통한 은행권의 기업대출 여력 확충 규모 등을 분석하여 제시한 바 있음. 최근 금융권의 기업금융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년중 금융권의 기업대출 규모가 큰 폭 증가하고 은행권의 기업대출 증가율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앞서는 등 금융권의 기업금융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위원) 향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정책대응의 효과를 분석해 두면 추후 유사한 조치를 할 때 참고가 될 것임.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금융위원회 제4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49분 폐회)